

미룰 수 없는 방송통신융합법

국민과 국가발전 위한 미래지향적 통합기구 탄생 위해 지혜 모아야

〈김승모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융합전략팀 행정사무관〉

1.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

작년 7월,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출범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방송통신 기구통합을 디지털 융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지난 10월, 추진위원회는 출범 이후 약 40여 차례의 많은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 기구개편 방안』을 의결하였고, 독임제 요소를 포함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를 다수안으로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추진위원회의 전의사항을 토대로 외국의 기구개편 사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년 말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을 마련하였다.

(1)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통합기구의 기본 성격은 방송과 정보통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독임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장관급), 부위원장 2인 및 상임위원 2인(차관급) 등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고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그 외 상임위원 2인은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였으며, 교차임기제도를 도입하여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 업무

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3년 임기중 그 직무상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여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였다.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기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그대로 1:1 통합하여 방송·정보통신·전파관리·우정제도·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였다. 다만,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의 변경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 소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 소관사무 중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허가, 방송프로그램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19개의 중요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독립 민간 심의기구로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방송통신의 독립성 보장에 핵심적인 내용심의에 대하여는 현행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치토록 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상임)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비상임위원 8인(총 9인)으로 구성하며, 국회에서 6인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위촉토록 하였다.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3인 추천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3인 추천하도록 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토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조직을 설치하며, 사무조직의 직원은 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의 방송위 사무처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거나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고용승계를 보장하였다.

2. 법률안 주요이슈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 마련 과정에서 방송의 독립성 제고와 정보통신 산업진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법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무엇보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 가운데 방송통신위원 5인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에 대해 ‘방송 장악 의도’라고 하거나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 임명방법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의 방송위원회 운영방식과 방송위원 임명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측면이 있다.

2000년 정부에서 독립된 민간 합의제 기구로 출범한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정책결정의 비효율성, 위원의 정파적 임명에 따른 정치적 독립성 및 전문성 부족, 비상임위원의 책임성 약화 등의 문제점이 방송계 안팎에서 무수히 지적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게 설립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뿐만 아니라 기존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 정보화 등 적시성과 효율성이 필요한 진흥업무도 함께 담당하기 때문에 정책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현행 무소속 방송위원회와는 달리 신설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행정작용은 대통령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정부는 방송통신위원 선임 문제에서 이미 문제점이 드러난 현 방송위와 같은 정파적 배분을 배제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를 택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



를 택하더라도,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위원장은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자격요건을 법정화하여 일정한 자격을 자진 자만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위원의 신분보장과 직무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에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면서도 방송사업자 협회, 방송사 임원 임명 등 방송의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배제하였으며, 방송통신의 내용심의를 담당하는 민간 독립기구로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둘째, 일부에서는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늬만 합의제 위원회이고 실제는 독임제 부처라는 주장이 있다. 통합기구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순수한 위원회 형태가 아닌 점을 지적한 것이나, 이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기구통합 결정배경을 이해하면 오해가 풀릴 것으로 본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기구통합의 기본원칙은 방송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합의제 형태를 채택하는 동시에, 방송통신 산업진흥을 위해 독임제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이는 기존 정보통신부가 독임제 형태로 수행해 온 기능들을 향후 통합위원회에서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신속성·효율성·책임성이 요구되는 방송통신 관련 산업 진흥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현행 방송위원회도 다양한 진흥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현

실상 위원회에서도 진통기능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양해가 필요하다.

반면, 위원회 소관사무 중 방송 및 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허가, 방송프로그램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19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협행 방송 법상 방송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보다도 더 확대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위원장이 처리하게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합의제 위원회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셋째, 일부에서는 통합위원회 기능 및 권한의 비대화를 우려하여 IT산업, 정보화, 디지털 콘텐츠, 우정 등에 대한 기능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통합위원회는 방송통신에 한정된 순수 규제기구로 출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기구통합의 목적은 방송통신 융합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지 정부부처 간 기능조정이 아니다. 부처 간 기능조정은 불가피하게 정부 조직 개편을 수반하므로 동 논의에 치중할 경우 부처 간 이해 관계의 극심한 대립을 초래하여 통합기구 출범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정부법안처럼 기본적으로 타 부처의 기능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기능 확대를 도모하는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불신을 유발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방송통신 기구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역으로 기능 해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의 정체를 초래하는 것은 기구통합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지난 1884년 이후 현법상 기본 통신권 보장이자 정보통신의 모태로서 역할을 수행해 온 우정기능은 당분간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되, 적정한 시점에서 우정청을 설립하는 게 적절하다.

따라서, 통합위원회의 조속한 출범, 기능조정을 둘러싼 부처 간의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 지양, 정책추진체계의 일관성·효율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재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전체 기능을 그대로 통합하되, 출범 이후 과감한 규제완화로 민간분야의 활력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3. 디지털융합시대를 선도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속한 출범 기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다시 한번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법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롭게 고려하여야 할 부분은 적절한 논의를 거쳐 반영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방송계와 통신계는 자신만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 통합기구가 탄생되도록 협력을 모아 협력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의 융합현상은 시대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산업화에는 늦었지만 정보화에는 앞서나가 'IT 일등국가 Korea'를 실현했던 경험을 되살려, '방송통신 융합 일등국가 Korea'를 구현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기대해 본다. ■